무배당 LIG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신탁제공용)

사업방법서

LIG손해보험주식회사

1. 보험의 종류

퇴직연금(퇴직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LIG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신탁제공용)

3. 사업경영의 지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하는 전지역으로 한다.

4. 보험의 목적

본 계약에서 정한 금액

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는 신탁업자로 한다.

6. 보험종목의 세목

1년 만기 이율보증형.

7.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적용이율

적용이율은 이 계약의 약관 '별표1'에서 명시하는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한다.

9. 보험료

계약자가 이 보험의 약관 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나. 납입기간

전기납.

다.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11. 보험계약체결의 절차

가.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나.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 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12. 해지환급금의 지급

가. 회사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나.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

지화급금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13.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1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5.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6.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선정

이 보험은 1년 만기 이율보증형 특별계정을 선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2) 수수료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계약자의 청구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③ 자산관리수수료 및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 한다.

17.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단위보험

-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한다.
- 나.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하며,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은 1 년으로 한다.
- 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시 각 단위보험별로 '8. 적용이율'에서 정한 적용이율이 보증되며,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 라.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다'항을 준용한다.
- 마.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자로부터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직전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로 한다.

19. 약관의 변경

- (1) 약관의 변경내용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계약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계약자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3)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1)항의 단 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계약자가 (1)항의 계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12.해지환급금의 지급 나항'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